

현 행	개 정 (안)
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(생략) 제8조(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) ①(생략) ②(생략) 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<u>시장의 협의를 거쳐 별지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u>	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(현행과 같음) 제8조(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<u>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u>
제16조(분뇨관련 영업의 허가)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,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·장비·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<u>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리를 하여야 한다.</u> ②(생략) ③(생략)	제16조(분뇨관련 영업의 허가)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,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·장비·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<u>허가 또는 변경허리를 하여야 한다.</u> 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증

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4. 7. 5.

시민보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6. 2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6. 30.

다. 상정일자 : 제23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('94. 7. 5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수용 청소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하는 제도를 추가 신설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처 예규 제101호와 부합되게 개정·보완하고 과태료 부과·징수에 따른 각종 서식을 신설코자 본 조례를 개정함.

나. 주요골자

-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)
-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.

3.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

(김전재 전문위원)

-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6조의 과태료 처분통지등에 있어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현장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, 동처분 및 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필요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음.
- 동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, 이는 1994. 2. 5 환경처 예규 제101호에 근거한 개정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(윤정용 위원):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면 폐기물의 무단 투기가 근절된다고 보는가?
- 답변(정수용 청소과장): 8명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며, 폐기물 무단투기자가 항의할 경우 연행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본다.
- 질의(윤정용 위원): 조례시행 이전에 몰래 버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?
- 답변(조정용 청소과장): 쓰레기 수거계획을 세우고 있으며, 7월말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다. 또한 신고요원도 확보하겠다.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
조례(안)

의안	310
번호	

제출년월일: 1994. 6. 27.
제출자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하는 제도를 추가 신설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처 예규 제101호와 부합되게 개정·보완하고 과태료 부과·징수에 따른 각종 서식을 신설 코자 본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골자

-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(안, 제26조)
-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(별지 제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4. 3. 16 법률 제4741호) 제15조
- 폐기물관리법(1994. 3. 16 법률 제4541호) 제7조, 제15조, 제63조
- 폐기물관리법시행령(1993. 6. 26 대통령령 제13914호) 제5조, 제42조
-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(1993. 9. 9 총리

령 제431호) 제84호

○ 환경처 예규(1994. 2. 5 제101호)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필요성 : 불필요

**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
조례(안)**

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증 다음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(과태료 처분통지등)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.

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.

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,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(변경)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7조 내지 제28조를 제31조 내지 제32조로 하고, 제27조 내지 제30조를 다음

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(청문)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을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.

제28조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)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9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·관리)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30조(과태료의 귀속)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제 호

수 신

제 목 : 과태료 처분통지

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일시 :

나. 위반내용 :

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시중금융기관(은행, 농협, 수협),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첨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

(별지 제2호서식)

과태료납부통지서

12
마포

제 호		년도 일반회계
남의 무 부자	성명 주소	
세 입 과 목	(관)임시적세외수입(항) 잡수입 (목)과태료(폐기물관리법위반)	
위 반 사 항	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	
과 태 료 금 액	원	
납부기한	년 월 일	
납부장소	시중 금융기관(은행, 농협, 수 협)우체국 번창구(한은, 산 은 제외)	
위의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제 63조 규정에 의거,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수 납 일 부 인
년 월 일		
마포구청장(인)		

(수납은행 보관용)

과태료영수필통지서

12
마포

제 호		년도 일반회계
남의 무 부자	성명 주소	
세 입 과 목	(관)임시적세외수입(항) 잡수입 (목)과태료(폐기물관리법위반)	
위 반 사 항	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	
과 태 료 금 액	원	
납부기한	년 월 일	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		
년 월 일		수 납 일 부 인
마포구청장 귀하		

(구청 보관용)

과 태 료 영 수 증

12
마포

제 호		년도 일반회계
남의 무 부자	성명 주소	
세 입 과 목	(관)임시적세외수입(항) 잡수입 (목)과태료(폐기물관리법위반)	
위 반 사 항	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	
과 태 료 금 액	원	
납부기한	년 월 일	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		
수 납 일 부 인		수 납 일 부 인
년 월 일		년 월 일
마포구청장(인)		은행 지점(인)

(별지 제2호의2서식)

(갑)

(처분기관 보관용)

[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]

회 계 년 도	년도 일반회계	세 입 과 목	(관)임시적세외수입(항) 잡수입 (목)과태료(폐기물관리법위반)	제 좌 번 호
위 반 행 위 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
과 태 료 금 액	원	납 부 기 한	까지 납 부 장 소	시중금융기관(은행, 농협, 수협)우체국
위 반 사 실	일시	내 용		
위 반 법 틀	폐기물관리법 제7·15조	의견진술기간	까지	의견진술장소
위 반 행 위 자 서명			단속공무원 확인	

년 월 일

특기사항

-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
- 서식 갑, 및 병, 정을 각각 복사용먹지 부착 인쇄

168mm×118mm

(인쇄용지[특급]34g/m²)

[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]

회계년도	년도 일반회계		세입과목	(관) 임시적세의수입(항) 잡수입 (목) 과태료(폐기물관리법위반)		계좌번호		
위반행위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	주소				
과태료금액	원	납부기한	까지	납부장소	시중금융기관(은행, 농협, 수협)우체국			
위반사실	일시	내용						
위반법률	폐기물관리법 제7·15조		의견진술기간	까지	의견진술장소			
위반행위자 서명				단속공무원 확인				

-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.
-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인)

168mm×118mm

(인쇄용지[특급]34g/m²)

(병)

(수납은행 보관용)

【과태료 납부서】

12

마포

회계년도	년도 일반회계		세입과목	(관) 임시적세외수입(행) 잡수입 (목) 과태료(폐기물관리법위반)	계좌번호
납부의무자	성명	주소			
과태료금액	원	납부기한	까지	납부장소	시중금융기관(은행, 농협, 수협)우체국
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금융기관 :

수납일자인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(인)

168mm × 118mm

(인쇄용지[특급] 34 g / m²)

(정)

(개인통지용)

[과태료 납부 서명 수증]

12

마포

회계년도	년도 일반회계		세입과목	(관)임시적세외수입(항) 잡수입 (목)과태료(폐기물관리법위반)		제작번호	
납부의무자	성명		주소				
과태료금액	원	납부기한		까지	납부장소	시중금융기관(은행, 농협, 수협)우체국	
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금융기관:

수납일자인

취급자인

168mm×118mm

(인쇄용지[특급]34g/m²)

(무)

(구청 통보용)

12

마포

【과태료 납부영수증 통지서】

회계년도	년도 일반회계	세입과목	(관) 임시적세외수입(항) 잡수입 (목) 과태료(폐기물관리법위반)	계좌번호
납부의무자	성명	주소		
과태료금액	원	납부기한	까지	납부장소 시중금융기관(은행, 농협, 수협)우체국
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금융기관 :

수납일자인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168mm × 118mm

(인쇄용지[특급] 34 g/m²)

(별지 제3호서식)

과태료 납부 측장		
납부의무자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소	
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		
⑤ 위반사항		
⑥ 과태료 금액		⑦ 당초납부기한

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
시중금융기관(은행, 농협, 수협)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
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

(별지 제4호서식)

제 호

과 태 료 부 과 취 소(변 경)통 지 서

주 소 :

성 명 :

① 고 지 금 액	②취소(변경)액	③차 액	비 고

취소(변경)사유 :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

(별지 제5호서식)

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				
납부의무자	① 성명 (한자)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		
과태료 처분내역	④ 부과 기준		⑥ 납부통지서번호	
	⑤ 고지받은일자		⑦ 과태료금액	
	⑧ 과태료처분사유			
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			

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
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
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(별지 제6호서식)

수 신

발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

제 목 :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

1.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.

2.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
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
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과태료 처 분에 대한 이의제기자	① 성 명	(한자)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			
과 태 료 처분내역	④ 고지 일자		⑥ 과 태 료 금 액	
	⑤ 부과 기간		⑦ 이의제기 일자	

첨부 : 1.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.

2.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.

부록 수학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정안
<p>제26조(과태료 부과등) ①법 제63조제1항 제1호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 태료 부과 등은 시조례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6조(과태료처분 통지 등)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 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 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.</p> <p>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 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. 이 기간내 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 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 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 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,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(변경) 통지 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.</p>
(신설)	제27조(청문)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 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
(신설)	

현 행	개 정 안
	<p><u>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 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.</u></p>
(신설)	<p><u>제28조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) ① 구청 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자는 그 처 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 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 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.</u></p>
(신설)	<p><u>제29조(과태료수납부 비치·관리)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 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 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
(신설)	<p><u>제30조(과태료의 귀속) 과태료는 부과징수 한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.</u></p>
제7장 보 칙	제7장 보 칙
제27조(준용규정) (생략)	제31조(준용규정) (현행 제27조와 같음)
제28조(시행규칙) (생략)	제32조(시행규칙) (현행 제28조와 같음)